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708호 2021. 12. 13.(월)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575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
남해군 조례 제2576호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4
남해군 조례 제2577호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6
남해군 조례 제2578호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8
남해군 조례 제2579호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남해군 조례 제2580호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남해군 조례 제2581호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남해군 조례 제2582호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남해군 조례 제2583호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1
남해군 조례 제2584호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남해군 조례 제2585호	남해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29
남해군 조례 제2586호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남해군 조례 제2587호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	39
남해군 조례 제2588호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남해군 조례 제2589호	남해군 건축물 관리 조례	44
남해군 조례 제2590호	남해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48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206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2
---------------	-----------------------------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1-185호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 폐기 고시	59
-------------------	---------------------	----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1-1360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66
남해군 공고 제2021-1608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70
남해군 공고 제2021-1633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74
남해군 공고 제2021-1634호	2025년 남해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79

회 랑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성과담당관(860-3045, 행정 3045)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575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73명” 을 “676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3명” 을 “16명”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읍·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총 계	676					
정무직 계	1					
일반직 계	646					
4급	4	3		1		
4~5급	1	1				
5급	34	14	3	2	5	10
6급이하 소계	606					
전문경력관	1					
별정직	1					
기록연구사	1					
농촌지도사	27					

남해군 조례 제2576호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남면 홍현의 행정리별란 중 “가 천” 을 “다랭이” 로 한다.

읍면별	법정리별	행정리별	반 수	반 명	구 역	비 고
남면	홍 현	홍 현1	3	1-3	일원	
		무지개	2	1-2	”	
		다랭이	2	1-2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77호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남면 홍현리의 관할구역란 중 “가천” 을 “다랭이” 로 한다.

읍면별	리명	정원	관할구역
남면	홍현리	3	홍현1, 무지개, 다랭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78호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속기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남해군의회와 통합 운영) 군수는 남해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79호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수”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군민”을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 단서 중 “법 제26조제6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6항”으로 한다.

제5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제출

제17조(군민의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의견제출) ① 군수는 군민이 법 제 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 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제출 제외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19조(의견제출 방법) ① 군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제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19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의견제출 검토·처리) ①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③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22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23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군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 대표자 <small>※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 표시</small>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 명
의견 <small>※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small>	
참고자료 <small>※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small>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 해 군 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2580호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1호의 마을회관과 그 일단의 구역 안에 있으면서 마을회관의” 를
“제1호 마을회관의” 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2억5천만원 이하” 를 “3억원 이하”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마을부터 적용한다.

남해군 조례 제2581호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본문 중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 을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 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를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하되,” 로 한다.

별표 6의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법조문	과태료
5.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1호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완성된 행정행위는 그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남해군 조례 제2582호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3항에 따른”을 “제6조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 외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범죄와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공간을 막는 안심 가림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로 한다.

제6조 중 “군수”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전담인력)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른 시설 점검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민간화장실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점검을 신청할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화장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 점검자에게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거나 점검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83호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귀촌 예정자와 도시민의 농촌체험을 위해 남해군과 서울특별시가 협약에 의해 조성한 남해군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남해군 서울농장(이하 “서울농장” 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 534 일원으로 한다.

제3조(업무 등)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서울농장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서울농장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시행
2. 서울농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서울농장 체험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4. 청년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및 특산품 판매 등 지역활력화 사업
5. 그 밖에 도농교류 및 서울농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체험프로그램 개설 운영 등) ① 군수는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과 서울특별시가 협의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서울농장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기간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년 도농 교류사업, 농촌체험 등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참가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운영재원) 서울농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군수와 서울특별시장이 협의하여 정한 분담금과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6조(민간위탁) ① 군수는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서울농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서울농장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체험료) 제4조제1항에 따른 서울농장 체험료는 별표에 따른다.

제8조(체험료의 반환) 이용자가 납부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체험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남해군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서울농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서울농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울농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서울농장 업무담당 국장, 농축산 업무 부서장, 상주면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귀농·귀촌 분야 전문가
 3. 농촌체험프로그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도농교류 및 서울농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농장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남해군 서울농장 체험료(제7조 관련)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체 험 료	1인 1일	100,000원 이하	숙박포함

[별지 서식]

남해군 서울농장 위탁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명(성별)		전화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위탁시설	시 설 명		면적(m ²)	
	시 설 명		면적(m ²)	
	시 설 명		면적(m ²)	
	시 설 명		면적(m ²)	
	시 설 명		면적(m ²)	
	시 설 명		면적(m ²)	
위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간)			
위탁목적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법인(단체) 소개서 1부.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대표자)

인

남 해 군 수 귀 하

남해군 조례 제2584호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 중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 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85호

남해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래연습장업”이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요청으로 그 종업원 중 영업장의 관리책임자에게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가 받은 교육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받은 교육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제9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 따라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교육실시 방법) ① 제3조에 따른 교육은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강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육통지) 군수가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군수는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을 위탁 실시할 경우 수탁자는 교육 종료 후 3일 이내에 교육대상자의 참석 여부 및 교육실시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 교육을 유예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남해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

교 육 대상자	상호(법인명)	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영업장 소재지	
교육일시	년 월 일 시	
교육장소		

「남해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업무담당자 연락처 :

유의사항

1. 교육생 준수사항

- 가. 교육 대상자는 통지서 및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 시간 전까지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 교육등록 시 대리참석자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다.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해에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남 해 군 수

직인

[별지 제2호서식]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수료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 육 수료일자	
교육대상자	성명
	업소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수료하였기에 「남해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

[별지 제3호서식]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수대장

① 번 호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업소명	⑤ 성 명	⑥ 생년월일	⑦ 성별	비 고

[별지 제4호서식]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 면 제 신청서
[] 유 예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신청자	상호(법인명)	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성별 남 / 여
	업소명	연락처

교육	면제 유예기간
	면제 · 유예사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구분	대상자(해당란에 √ 표시)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유예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본인의 질병·사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국외출장	체류증명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세무서 휴업신고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기타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면제	[]세무서 폐업신고 또는 세무서장의 사업자 등록말소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인(대표자) _____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남해군 조례 제2586호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 을 “에 사업장”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최근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 을 “사업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87호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조례】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군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의 요청) 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 할 수 있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한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88호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이란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89호

남해군 건축물 관리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건축물 관리 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건축물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挫折)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남해군 건축 조례」 제10조에 따른 남해군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소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 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및 건본주택을 말한다.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감리자의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각 목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경우
 - 가.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 나. 국내·외 장기 출장 또는 교육을 간 경우
 - 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6.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授受)한 경우
7. 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남해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라 남해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90호

남해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이용안전 사업)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범구역 조성)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해군 관내에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제7조(이용안전 기준 마련)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시범구역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 방치된 경우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 등 안전보호 장구 착용
3.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마의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사항 준수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을 위한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속도(시속 25킬로미터) 점검
3. 개인형 이동장치 보관장 확보·운영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사업
2. 제8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206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남해군 정원관리기관별 정원표								
직렬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총계	합 계	676	354(2)	16	74	68	20	144
	정무직	1	1					
	일반직	646	351(2)	16	74	41	20	144
	별정직	1	1					
	연구직	1	1					
	지도직	27				27		
정무직계		1	1					
일반직계		646	351(2)	16	74	41	20	144
4급 합계		4	3		1			
서기관		1	1					
서기관·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		1			1			
4~5급 합계		1	1					
서기관·행정사무관		1	1					
5급 합계		34	14	3	2	5	1	9
행정		4	3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해양수산		2	1					1
행정·시설		6	6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3					1	2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1				
행정·농업·해양수산·보건		1		1				
행정·시설·해양수산·보건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		1						1
행정·농지·시설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2	2					
행정·환경·시설		1	1					
농업·농촌지도		1				1		
행정·농업·농촌지도		2				2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		1				1		
행정·농업·농지·농촌지도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보건·간호·의료기술·보건진료	1			1			
6급 합계	166	90	5	12	17	5	37
행정	23	18	4			1	
세무	1	1					
해양수산	4	4					
보건진료	3			3			
시설	5	5					
행정·전산	1	1					
행정·세무	4	4					
행정·사회복지	7	7					
행정·사서	1	1					
행정·사회복지·전산	7						7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농업	11	2					9
행정·농업·공업	2	2					
행정·농업·공업·녹지	2	2					
행정·녹지	1						1
행정·해양수산	4	4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2			2			
행정·보건·환경·농업	1	1					
행정·보건·환경·공업	1	1					
행정·시설	22	21					1
보건·간호·의료기술	6			6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	1				1		
농업·녹지	1				1		
농업·농촌지도	4				4		
행정·세무·농업	3					1	2
행정·세무·농업·보건	1						1
행정·세무·농업·해양수산	1						1
행정·세무·시설·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6	2					4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농업·녹지	4				4		
행정·환경	4	4					
행정·농업·시설	9	4					5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농업·농촌지도	5				5		
농업·공업·농촌지도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2						2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전산·농업·방송통신	1					1	
운전	2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7급 합계	198	106	4	35	8	8	37
행정	34	22	4			2	6
세무	6	2				1	3
사회복지	11	4				1	6
전산	1	1					
공업	5	4					1
해양수산	7	7					
보건	12			12			
의료기술	3			3			
간호	7			7			
보건진료	9			9			
환경	1	1					
시설	9	8				1	
행정·세무·전산	2	2					
행정·세무·농업	4	1					3
행정·전산·농업	1						1
행정·사회복지	18	8				2	8
행정·농업	9	1			3		5
행정·농업·녹지	7	2			3		2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2			2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22	22					
세무·전산	1	1					
행정·시설·방송통신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농업·시설	2	1					1
보건·간호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1			1			
보건·환경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3	1				1	1
운전	6	6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녹지	1	1					
8급 합계	173	99	3	21	6	4	40
행정	31	24	1			1	5
세무	4	3					1
사회복지	16	8				1	7
전산	1	1					
농업	3				3		
녹지	2	1			1		
해양수산	5	5					
환경	1	1					
보건·세무	1	1					
의료기술	6			6			
보건진료	6			6			
시설	11	7					4
방재안전	1	1					
행정·세무	5	2					3
행정·사회복지	12	3				1	8
행정·농업·시설	14	3			1	1	9
행정·전산	2	2					
행정·해양수산·전산	1	1					
행정·전산·사서	1	1					
행정·환경	4	3					1
행정·시설	12	12					
행정·시설·공업	1	1					
행정·사회복지·녹지·시설	1	1					
농업·녹지	1				1		
전산·방송통신	3	3					
해양수산·시설	1	1					
보건·간호	8			8			
행정·보건·환경	3	3					
운전	7	6		1			
숙기	2		2				
공업	7	5					2

9급 합계	69	38(2)	1	3	4	2	21
행정	20	13(2)	1				6
세무	4	2					2
사회복지	7	2				1	4
농업	1				1		
해양수산	2	2					
환경	3	3					
시설	5	2					3
방재안전	1	1					
의료기술	1			1			
행정·시설	8	8					
행정·세무·전산	2	1					1
행정·사회복지	3	2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공업	6	1			2		3
행정·전산·보건	1			1			
운전	2			1	1		
사무운영	2					1	1
농기계교관	1				1		
일반비서	1	1					
기록연구	1	1					
농촌지도	27				27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입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1-185호

지적기준점(도근점)성과 폐기 고시

지적기준점이 폐기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일

남 해 군 수

- 지적기준점성과 폐기 고시현황
 - 폐기 지적기준점(도근점) 수 : 322점(창선면, 삼동면 일원)
 - 폐기 지적기준점(도근점) 내용 : 붙임 참조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 ☎860-30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공보

(60) 제 708 호

2021년 12월 13일

연번	종류	기준점명	좌표구분	X좌표	Y좌표	상세주소	설치구분	폐기일자
1	도근점	9001	지역	151643.75	292440.15	창선면 상죽리 291-2	폐기	2021.12.03.
2	도근점	9002	지역	151566.32	292507.91	창선면 상죽리 91-2	폐기	2021.12.03.
3	도근점	9003	지역	151532.04	292444.41	창선면 상죽리 276-1	폐기	2021.12.03.
4	도근점	9004	지역	151512.49	292418.75	창선면 상죽리 275	폐기	2021.12.03.
5	도근점	9005	지역	151505.46	292390.07	창선면 상죽리 268	폐기	2021.12.03.
6	도근점	9006	지역	151463.62	292431.36	창선면 수산리 155-4	폐기	2021.12.03.
7	도근점	9007	지역	151459.94	292455.69	창선면 상죽리 153-5	폐기	2021.12.03.
8	도근점	9017	지역	151246.61	292686.91	창선면 수산리253	폐기	2021.12.03.
9	도근점	9018	지역	151258.08	292698	창선면 수산리263	폐기	2021.12.03.
10	도근점	9019	지역	151316.76	292595.32	창선면 수산리196-2	폐기	2021.12.03.
11	도근점	9020	지역	151226.98	292596.76	창선면 수산리222-2	폐기	2021.12.03.
12	도근점	9022	지역	151182.38	292640.79	창선면 수산리 223-2	폐기	2021.12.03.
13	도근점	9024	지역	150962.49	292579.69	창선면 수산리453	폐기	2021.12.03.
14	도근점	9026	지역	151462.04	292389.96	창선면 상죽리163-5	폐기	2021.12.03.
15	도근점	9027	지역	153614.33	289874.49	창선면 서대리802-2	폐기	2021.12.03.
16	도근점	9029	지역	153675.74	289806.62	창선면 서대리801-10	폐기	2021.12.03.
17	도근점	9032	지역	153643.32	289505.19	창선면 서대리 764-4	폐기	2021.12.03.
18	도근점	9034	지역	153722.97	289868.37	창선면 서대리 800-6	폐기	2021.12.03.
19	도근점	9035	지역	153803.88	289838.74	창선면 서대리 800-6	폐기	2021.12.03.
20	도근점	9036	지역	153865.66	289763.53	창선면 서대리 760-3	폐기	2021.12.03.
21	도근점	9037	지역	153946.67	289720.85	창선면 서대리 760-1	폐기	2021.12.03.
22	도근점	9039	지역	154058.53	289592.52	창선면 서대리 759-3	폐기	2021.12.03.
23	도근점	9040	지역	154044.69	289508.74	창선면 서대리 761-2	폐기	2021.12.03.
24	도근점	9042	지역	153912.56	289344.97	창선면 서대리 763-1	폐기	2021.12.03.
25	도근점	9043	지역	153843.18	289296.07	창선면 서대리 763-2	폐기	2021.12.03.
26	도근점	9044	지역	153744.09	289183.87	창선면 서대리 766-1	폐기	2021.12.03.
27	도근점	9045	지역	153916.98	289645.56	창선면 서대리761-12	폐기	2021.12.03.
28	도근점	9049	지역	153827.46	289441.32	창선면 서대리763-8	폐기	2021.12.03.
29	도근점	9062	지역	152312.31	294997.04	창선면 오용리 1127	폐기	2021.12.03.
30	도근점	9147	지역	151539.93	293916.68	창선면 오용리 1212	폐기	2021.12.03.
31	도근점	9148	지역	151448.75	293968.51	창선면 오용리 1212	폐기	2021.12.03.
32	도근점	9149	지역	151329.63	294014.03	창선면 오용리 1213	폐기	2021.12.03.
33	도근점	9150	지역	151190.36	294069.83	창선면 부윤리 265	폐기	2021.12.03.
34	도근점	9155	지역	151226.45	293956.18	창선면 오용리 1339	폐기	2021.12.03.
35	도근점	9158	지역	151521.05	293765	창선면 오용리 1289	폐기	2021.12.03.
36	도근점	9159	지역	151636.62	293752.19	창선면 오용리 1289	폐기	2021.12.03.
37	도근점	9161	지역	155290.34	292347.17	창선면 당항리 산126-1	폐기	2021.12.03.
38	도근점	9162	지역	155377.98	292205.58	창선면 당항리 707-1	폐기	2021.12.03.
39	도근점	9163	지역	155405.77	292131.51	창선면 당항리707-3	폐기	2021.12.03.
40	도근점	9166	지역	155600.64	291648.46	창선면 울도리 60-2	폐기	2021.12.03.
41	도근점	9167	지역	155619.22	291565.74	창선면 울도리 904	폐기	2021.12.03.
42	도근점	9170	지역	156063.63	290819.77	창선면 울도리 481-5	폐기	2021.12.03.
43	도근점	9171	지역	150697.16	290725.31	창선면 울도리 503-3	폐기	2021.12.03.
44	도근점	9172	지역	156323.64	290590.02	창선면 울도리 455	폐기	2021.12.03.
45	도근점	9174	지역	156512.16	290741.17	창선면 울도리 산60-6	폐기	2021.12.03.
46	도근점	9175	지역	156647.14	291171.3	창선면 울도리 산60-6	폐기	2021.12.03.
47	도근점	9176	지역	157452.58	291616.44	창선면 대벽리 801-5	폐기	2021.12.03.
48	도근점	9178	지역	157655.79	292107.59	창선면 대벽리 산153-4	폐기	2021.12.03.
49	도근점	9206	지역	150566.84	291736.86	창선면 옥천리 44	폐기	2021.12.03.
50	도근점	9208	지역	150501.87	291462.74	창선면 옥천리323	폐기	2021.12.03.
51	도근점	9211	지역	150295.65	291110.54	창선면 옥천리 356-2	폐기	2021.12.03.
52	도근점	9212	지역	150250.31	291040.03	창선면 옥천리 238-2	폐기	2021.12.03.
53	도근점	9214	지역	149992.98	290960.85	창선면 옥천리190-2	폐기	2021.12.03.
54	도근점	9215	지역	149851.96	291035.37	창선면 옥천리106	폐기	2021.12.03.
55	도근점	9216	지역	149743.74	291079.69	창선면 옥천리109	폐기	2021.12.03.

연번	종류	기준점명	좌표구분	X좌표	Y좌표	상세주소	설치구분	폐기일자
56	도근점	9218	지역	149507	291071.9	창선면 지족리 216	폐기	2021.12.03.
57	도근점	9220	지역	149465.39	289723.4	창선면 지족리 540-4	폐기	2021.12.03.
58	도근점	9221	지역	149242.24	290080.48	창선면 지족리 475-2	폐기	2021.12.03.
59	도근점	9222	지역	149240.17	290570.12	창선면 지족리 361-1	폐기	2021.12.03.
60	도근점	9227	지역	149135.89	291211.6	창선면 지족리 309-9	폐기	2021.12.03.
61	도근점	9231	지역	155096.65	289983.75	창선면 울도리 산187-5	폐기	2021.12.03.
62	도근점	9232	지역	154651.3	289889.63	창선면 서대리 471-5	폐기	2021.12.03.
63	도근점	9233	지역	154526.8	289814.52	창선면 서대리 509-6	폐기	2021.12.03.
64	도근점	9234	지역	154577.68	289431.18	창선면 서대리 516-12	폐기	2021.12.03.
65	도근점	9235	지역	154375.12	289638.88	창선면 서대리 527-5	폐기	2021.12.03.
66	도근점	9236	지역	154278.68	289562.34	창선면 서대리 산32-2	폐기	2021.12.03.
67	도근점	9237	지역	154164.71	289577.69	창선면 서대리 산37-2	폐기	2021.12.03.
68	도근점	9238	지역	154052.8	289651.62	창선면 서대리 1276	폐기	2021.12.03.
69	도근점	9239	지역	153896.63	289777.89	창선면 서대리 593-1	폐기	2021.12.03.
70	도근점	9240	지역	153822.31	289813.64	창선면 서대리 728-2	폐기	2021.12.03.
71	도근점	9241	지역	153650.38	289951.83	창선면 서대리 672	폐기	2021.12.03.
72	도근점	9242	지역	153514.45	290148.37	창선면 서대리 216-3	폐기	2021.12.03.
73	도근점	9243	지역	153166.9	290640.5	창선면 서대리 산 120-3	폐기	2021.12.03.
74	도근점	9244	지역	153137.65	290722.6	창선면 서대리 산 120-4	폐기	2021.12.03.
75	도근점	9245	지역	153100.2	290734.26	창선면 동대리 1019-2	폐기	2021.12.03.
76	도근점	9246	지역	153077.32	290755.06	창선면 동대리 1019-1	폐기	2021.12.03.
77	도근점	9247	지역	153037.22	290800.44	창선면 동대리 1021	폐기	2021.12.03.
78	도근점	9250	지역	149715.23	289433.38	창선면 지족리 755-2	폐기	2021.12.03.
79	도근점	9252	지역	149836.99	289283.38	창선면 지족리 792-5	폐기	2021.12.03.
80	도근점	9253	지역	149893.5	289198.01	창선면 지족리 764-3	폐기	2021.12.03.
81	도근점	9256	지역	150175.52	289028.92	창선면 지족리 821-5	폐기	2021.12.03.
82	도근점	9257	지역	150283.07	288940.94	창선면 지족리 834-3	폐기	2021.12.03.
83	도근점	9259	지역	150512.31	288786.04	창선면 광천리 242-3	폐기	2021.12.03.
84	도근점	9260	지역	150592.16	288669.65	창선면 광천리 291-1	폐기	2021.12.03.
85	도근점	9261	지역	150648.75	288562.63	창선면 광천리 275-4	폐기	2021.12.03.
86	도근점	9262	지역	150780.81	288475.89	창선면 광천리 1006	폐기	2021.12.03.
87	도근점	9263	지역	150874.07	288385.73	창선면 광천리 337-4	폐기	2021.12.03.
88	도근점	9264	지역	150972.69	288298.02	창선면 광천리 400-3	폐기	2021.12.03.
89	도근점	9265	지역	151073.54	288222.58	창선면 광천리 429-2	폐기	2021.12.03.
90	도근점	9266	지역	151194.93	288154.65	창선면 광천리 548-6	폐기	2021.12.03.
91	도근점	9267	지역	151332.77	288170.96	창선면 광천리 548-6	폐기	2021.12.03.
92	도근점	9268	지역	151399.17	288186.18	창선면 광천리 548-6	폐기	2021.12.03.
93	도근점	9270	지역	151696.49	288179.14	창선면 광천리 584-10	폐기	2021.12.03.
94	도근점	9272	지역	151909.65	288020.3	창선면 광천리 932-3	폐기	2021.12.03.
95	도근점	9273	지역	152048.25	287961.94	창선면 광천리 산75-1	폐기	2021.12.03.
96	도근점	9274	지역	152166.78	287988.18	창선면 광천리 산75-1	폐기	2021.12.03.
97	도근점	9276	지역	152327.33	288135.46	창선면 광천리 산55-3	폐기	2021.12.03.
98	도근점	9277	지역	152444.11	288212.84	창선면 광천리 791-6	폐기	2021.12.03.
99	도근점	9278	지역	152539.39	288267.84	창선면 광천리 808-2	폐기	2021.12.03.
100	도근점	9281	지역	152879.7	288347.1	창선면 광천리 912-1	폐기	2021.12.03.
101	도근점	9282	지역	150983.91	293264.05	창선면 수산리 405-1	폐기	2021.12.03.
102	도근점	9292	지역	150677.77	293388.14	창선면 당저리 704	폐기	2021.12.03.
103	도근점	9293	지역	150581.75	293401.05	창선면 부윤리 산54-8	폐기	2021.12.03.
104	도근점	9294	지역	150423.77	293372.14	창선면 부윤리 679-2	폐기	2021.12.03.
105	도근점	9295	지역	150434.17	293492.32	창선면 부윤리 679-2	폐기	2021.12.03.
106	도근점	9296	지역	150219.17	293514.5	창선면 부윤리 산67-31	폐기	2021.12.03.
107	도근점	9297	지역	150086.46	293430.48	창선면 부윤리 산67-31	폐기	2021.12.03.
108	도근점	9298	지역	149975.86	293325.62	창선면 당저리 478-8	폐기	2021.12.03.
109	도근점	9299	지역	149881.05	293320.03	창선면 당저리 478-8	폐기	2021.12.03.
110	도근점	9300	지역	149889.91	293176.32	창선면 당저리 570-2	폐기	2021.12.03.

연번	종류	기준점명	좌표구분	X좌표	Y좌표	상세주소	설치구분	폐기일자
111	도근점	9302	지역	150877.99	293220.06	창선면 수산리 435	폐기	2021.12.03.
112	도근점	9303	지역	150784.94	293168.79	창선면 수산리 436	폐기	2021.12.03.
113	도근점	9304	지역	150678.24	293149.17	창선면 당저리 51	폐기	2021.12.03.
114	도근점	9305	지역	150625.42	293259.33	창선면 당저리 1	폐기	2021.12.03.
115	도근점	9306	지역	150479.31	293187.55	창선면 당저리 39	폐기	2021.12.03.
116	도근점	9307	지역	150367.36	293135.1	창선면 당저리 194-2	폐기	2021.12.03.
117	도근점	9308	지역	150208.19	293129.93	창선면 당저리 217	폐기	2021.12.03.
118	도근점	9309	지역	150312.73	293242.19	창선면 당저리 195-4	폐기	2021.12.03.
119	도근점	9310	지역	150023.37	293086.12	창선면 당저리 219-4	폐기	2021.12.03.
120	도근점	9312	지역	150390.01	293011.32	창선면 당저리 194-2	폐기	2021.12.03.
121	도근점	9313	지역	150351.53	292971.12	창선면 당저리 194-8	폐기	2021.12.03.
122	도근점	9314	지역	150294.35	292974.11	창선면 당저리 195-5	폐기	2021.12.03.
123	도근점	9315	지역	150190.87	292952.73	창선면 당저리 217	폐기	2021.12.03.
124	도근점	9317	지역	156897.99	293638.12	창선면 당항리 116	폐기	2021.12.03.
125	도근점	9318	지역	156975.58	293684.48	창선면 당항리 107-8	폐기	2021.12.03.
126	도근점	9319	지역	156971.77	293842.75	창선면 당항리 175-4	폐기	2021.12.03.
127	도근점	9320	지역	151649.12	292444.46	창선면 상죽리 300-1	폐기	2021.12.03.
128	도근점	9321	지역	151955.1	292207.96	창선면 상신리 214-5	폐기	2021.12.03.
129	도근점	9322	지역	152063.52	291223.92	창선면 상신리 산 29	폐기	2021.12.03.
130	도근점	9323	지역	152037.43	291219.06	창선면 상신리 산 29	폐기	2021.12.03.
131	도근점	9324	지역	152055.8	291131.91	창선면 옥천리 산 37	폐기	2021.12.03.
132	도근점	9325	지역	152070.84	291080.74	창선면 옥천리 산 37	폐기	2021.12.03.
133	도근점	9326	지역	152100.89	291052.8	창선면 옥천리 산 37	폐기	2021.12.03.
134	도근점	9327	지역	152165.76	291043.57	창선면 옥천리 산 37	폐기	2021.12.03.
135	도근점	9328	지역	152169.19	290978.44	창선면 옥천리 산 40	폐기	2021.12.03.
136	도근점	9329	지역	152251.33	290930.26	창선면 옥천리 산 45	폐기	2021.12.03.
137	도근점	9330	지역	152294.71	290889.28	창선면 옥천리 산 45	폐기	2021.12.03.
138	도근점	9331	지역	152329.13	290877.52	창선면 옥천리 산 45	폐기	2021.12.03.
139	도근점	9332	지역	152470.7	290621.07	창선면 옥천리 산 54-1	폐기	2021.12.03.
140	도근점	9333	지역	152466.93	290459.69	창선면 옥천리 산 54	폐기	2021.12.03.
141	도근점	9334	지역	152486.13	290399.45	창선면 옥천리 산 54	폐기	2021.12.03.
142	도근점	9335	지역	152534.19	290169.16	창선면 옥천리 1062	폐기	2021.12.03.
143	도근점	9336	지역	152390.44	290600.62	창선면 옥천리 산 78-1	폐기	2021.12.03.
144	도근점	9337	지역	152308.59	290784.47	창선면 옥천리 1014-2	폐기	2021.12.03.
145	도근점	9338	지역	152097.16	290837.16	창선면 옥천리 993-5	폐기	2021.12.03.
146	도근점	9339	지역	151926.61	290963.23	창선면 옥천리967-1	폐기	2021.12.03.
147	도근점	9344	지역	155219.64	292479.17	창선면 당항리 673-1	폐기	2021.12.03.
148	도근점	9345	지역	152482.57	292261.27	창선면 상신리 427	폐기	2021.12.03.
149	도근점	9346	지역	152680.8	292230.51	창선면 동대리 547	폐기	2021.12.03.
150	도근점	9347	지역	152838.12	292264.22	창선면 동대리 486-5	폐기	2021.12.03.
151	도근점	9349	지역	153098.33	292187.2	창선면 동대리482-4	폐기	2021.12.03.
152	도근점	9350	지역	153257.56	292231.63	창선면 동대리460	폐기	2021.12.03.
153	도근점	9354	지역	153888.8	292424.29	창선면 동대리 358-1	폐기	2021.12.03.
154	도근점	9360	지역	154615.8	292738.69	창선면 동대리 174-7	폐기	2021.12.03.
155	도근점	9361	지역	154729.46	292673.21	창선면 동대리 150	폐기	2021.12.03.
156	도근점	9363	지역	154958.85	292440.55	창선면 동대리43-3	폐기	2021.12.03.
157	도근점	9365	지역	151024.35	294219.79	창선면 부윤리 767	폐기	2021.12.03.
158	도근점	9366	지역	150950.73	294284.23	창선면 부윤리 768	폐기	2021.12.03.
159	도근점	9367	지역	150840.95	294345.67	창선면 부윤리 770	폐기	2021.12.03.
160	도근점	9374	지역	150722.62	294393.28	창선면 부윤리 772	폐기	2021.12.03.
161	도근점	9376	지역	150559.85	294610.59	창선면 부윤리 773	폐기	2021.12.03.
162	도근점	9377	지역	150551.95	294676.09	창선면 부윤리 773	폐기	2021.12.03.
163	도근점	9378	지역	150521.75	294864.87	창선면 부윤리 188	폐기	2021.12.03.
164	도근점	9379	지역	150879.39	294263.16	창선면 부윤리 746	폐기	2021.12.03.
165	도근점	9380	지역	150747.64	294319.57	창선면 부윤리 776	폐기	2021.12.03.

연번	종류	기준점명	좌표구분	X좌표	Y좌표	상세주소	설치구분	폐기일자
166	도근점	9382	지역	150539.3	294545	창선면 부윤리 763	폐기	2021.12.03.
167	도근점	9383	지역	150493.67	294693.74	창선면 부윤리 774	폐기	2021.12.03.
168	도근점	9384	지역	150208.5	293825.32	창선면 부윤리 산 67-32	폐기	2021.12.03.
169	도근점	9389	지역	150044.16	294635.47	창선면 부윤리 106	폐기	2021.12.03.
170	도근점	9391	지역	150054.6	294787.4	창선면 부윤리 127-1	폐기	2021.12.03.
171	도근점	9392	지역	150407.19	295004.87	창선면 부윤리 산 28-1	폐기	2021.12.03.
172	도근점	9393	지역	150596.83	294953.18	창선면 부윤리 183-3	폐기	2021.12.03.
173	도근점	9396	지역	150444.69	294222.55	창선면 부윤리 318	폐기	2021.12.03.
174	도근점	9397	지역	150398.89	294281.44	창선면 부윤리 산 79-3	폐기	2021.12.03.
175	도근점	9399	지역	150278.32	294387.93	창선면 부윤리 345	폐기	2021.12.03.
176	도근점	9403	지역	150137.63	294071.46	창선면 부윤리 330-15	폐기	2021.12.03.
177	도근점	9404	지역	149936.32	294744.02	창선면 부윤리 825	폐기	2021.12.03.
178	도근점	9405	지역	149918.7	294816.72	창선면 부윤리 40-1	폐기	2021.12.03.
179	도근점	9422	지역	150553.64	295936.03	창선면 진동리 379-1	폐기	2021.12.03.
180	도근점	9428	지역	149536.12	296621.64	창선면 진동리 296-5	폐기	2021.12.03.
181	도근점	9429	지역	149655.05	296425.04	창선면 진동리 산 235-1	폐기	2021.12.03.
182	도근점	9430	지역	149640.59	296210.24	창선면 진동리 산 235-23	폐기	2021.12.03.
183	도근점	9431	지역	149487.09	296085.16	창선면 진동리 산 222-3	폐기	2021.12.03.
184	도근점	9432	지역	149445.62	296011.49	창선면 진동리 산 223-3	폐기	2021.12.03.
185	도근점	9433	지역	149316.68	295693.44	창선면 부윤리 산 144-3	폐기	2021.12.03.
186	도근점	9440	지역	149435.9	289766.15	창선면 지족리 523-5	폐기	2021.12.03.
187	도근점	9441	지역	149549.95	289590.02	창선면 지족리 883	폐기	2021.12.03.
188	도근점	9442	지역	149660.81	289474.02	창선면 지족리 883	폐기	2021.12.03.
189	도근점	9443	지역	149812.43	289339.74	창선면 지족리 883	폐기	2021.12.03.
190	도근점	9444	지역	149880.99	289209.15	창선면 지족리 883	폐기	2021.12.03.
191	도근점	9445	지역	150013.89	289179.96	창선면 지족리 695-3	폐기	2021.12.03.
192	도근점	9449	지역	150550.11	288768.68	창선면 광천리 244-1	폐기	2021.12.03.
193	도근점	9450	지역	150646.35	288684.52	창선면 지족리 287	폐기	2021.12.03.
194	도근점	9451	지역	150829.71	288410.02	창선면 광천리 339-3	폐기	2021.12.03.
195	도근점	9475	지역	155417.15	290379.56	창선면 울도리 765-3	폐기	2021.12.03.
196	도근점	9499	지역	150689.03	290317.63	창선면 옥천리 639	폐기	2021.12.03.
197	도근점	9500	지역	150626.91	290409.89	창선면 옥천리 618	폐기	2021.12.03.
198	도근점	9501	지역	150610.12	290473.77	창선면 옥천리 590-3	폐기	2021.12.03.
199	도근점	9505	지역	154008.39	292364.8	창선면 동대리 273-1	폐기	2021.12.03.
200	도근점	9506	지역	153882.97	292322.41	창선면 동대리 351-2	폐기	2021.12.03.
201	도근점	9507	지역	153765.69	292287.21	창선면 동대리 343-6	폐기	2021.12.03.
202	도근점	9508	지역	153663.07	292286.45	창선면 동대리 379-4	폐기	2021.12.03.
203	도근점	9512	지역	151212.69	293341.36	창선면 부윤리 577-2	폐기	2021.12.03.
204	도근점	9516	지역	155351.83	292477.47	창선면 당항리 678-7	폐기	2021.12.03.
205	도근점	9536	지역	148762.53	291404.28	삼동면 지족리 291-19	폐기	2021.12.03.
206	도근점	9567	지역	152103.03	287961	창선면 광천리 산 66-2	폐기	2021.12.03.
207	도근점	9568	지역	152170.06	288008.16	창선면 광천리 1021	폐기	2021.12.03.
208	도근점	9569	지역	152307.63	288100.56	창선면 광천리 산 60-8	폐기	2021.12.03.
209	도근점	9595	지역	153639.43	289951.56	창선면 서대리 672	폐기	2021.12.03.
210	도근점	9601	지역	152704.87	292031.56	창선면 동대리 670-4	폐기	2021.12.03.
211	도근점	9629	지역	151202.18	292718.92	창선면 수산리 256-2	폐기	2021.12.03.
212	도근점	9633	지역	152720.46	291895.47	창선면 동대리 663-7	폐기	2021.12.03.
213	도근점	9634	지역	152693.11	291933.28	창선면 동대리 664-1	폐기	2021.12.03.
214	도근점	9635	지역	152658.94	291981.23	창선면 동대리 666-2	폐기	2021.12.03.
215	도근점	9648	지역	152795.66	292064.57	창선면 동대리 499-1	폐기	2021.12.03.
216	도근점	9681	지역	155612.87	291628.1	창선면 울도리 59-2	폐기	2021.12.03.
217	도근점	9688	지역	155944.51	290759.2	창선면 울도리 553-4	폐기	2021.12.03.
218	도근점	9689	지역	156067.71	290796.08	창선면 울도리 913	폐기	2021.12.03.
219	도근점	9690	지역	156133.51	290686.85	창선면 울도리 491-5	폐기	2021.12.03.
220	도근점	19311	세계	250940.994	297221.654	창선면 진동리 679	폐기	2021.12.03.

남 해 군 공 보

(64) 제 708 호

2021년 12월 13일

연번	종류	기준점명	좌표구분	X좌표	Y좌표	상세주소	설치구분	폐기일자
221	도근점	19312	세계	250945.23	297159.611	창선면 진동리 682	폐기	2021.12.03.
222	도근점	19313	세계	250925.485	297106.654	창선면 진동리 653	폐기	2021.12.03.
223	도근점	19314	세계	250923.318	297018.582	창선면 진동리 641	폐기	2021.12.03.
224	도근점	19315	세계	250918.106	296971.822	창선면 진동리 641	폐기	2021.12.03.
225	도근점	19316	세계	250871.33	296974.138	창선면 진동리 644-2	폐기	2021.12.03.
226	도근점	19317	세계	250722.183	296942.307	창선면 진동리 685	폐기	2021.12.03.
227	도근점	19318	세계	250823.801	297017.941	창선면 진동리 649	폐기	2021.12.03.
228	도근점	19319	세계	250821.394	297170.243	창선면 진동리 670	폐기	2021.12.03.
229	도근점	19320	세계	250812.365	297249.772	창선면 진동리 671-1	폐기	2021.12.03.
230	도근점	3001	지역	148626.71	291405.41	삼동면 지족리 291-7	폐기	2021.12.03.
231	도근점	3002	지역	148560.95	291408.95	삼동면 지족리 282-9	폐기	2021.12.03.
232	도근점	3004	지역	148552.73	291479.98	삼동면 지족리 388-2	폐기	2021.12.03.
233	도근점	3005	지역	148579.94	291529.29	삼동면 지족리 236-1	폐기	2021.12.03.
234	도근점	3008	지역	148572.94	291681.26	삼동면 지족리228-2	폐기	2021.12.03.
235	도근점	3011	지역	148467.88	291527.97	삼동면 지족리256	폐기	2021.12.03.
236	도근점	3012	지역	148373.09	291504.96	삼동면 지족리171	폐기	2021.12.03.
237	도근점	3013	지역	148363.09	291547.41	삼동면 지족리173	폐기	2021.12.03.
238	도근점	3014	지역	148459.23	291621.14	삼동면 지족리202-1	폐기	2021.12.03.
239	도근점	3015	지역	148483.08	291619.78	삼동면 지족리241	폐기	2021.12.03.
240	도근점	3018	지역	144718.73	296818.52	삼동면 물건리 1-5	폐기	2021.12.03.
241	도근점	3019	지역	144836.62	296905.58	삼동면 물건리 1-5	폐기	2021.12.03.
242	도근점	3020	지역	145044.85	297048.26	삼동면 물건리 1-5	폐기	2021.12.03.
243	도근점	3021	지역	145115.83	296200.68	삼동면 물건리 39-3	폐기	2021.12.03.
244	도근점	3022	지역	144838.58	296090.79	삼동면 물건리 39-3	폐기	2021.12.03.
245	도근점	3023	지역	144732.23	296074.58	삼동면 물건리 39-3	폐기	2021.12.03.
246	도근점	3024	지역	144599.08	296070.39	삼동면 물건리 481-3	폐기	2021.12.03.
247	도근점	3025	지역	144489.37	296094.02	삼동면 물건리 484-3	폐기	2021.12.03.
248	도근점	3026	지역	148359.66	293807.58	삼동면 금송리 210-2	폐기	2021.12.03.
249	도근점	3027	지역	148278.43	294104.8	삼동면 금송리 114-15	폐기	2021.12.03.
250	도근점	3033	지역	145215.1	294635.16	삼동면 봉화리 2158	폐기	2021.12.03.
251	도근점	3034	지역	145182.51	294689.07	삼동면 봉화리 5611	폐기	2021.12.03.
252	도근점	3035	지역	145192.9	294761.37	삼동면 봉화리2159	폐기	2021.12.03.
253	도근점	3037	지역	145243.02	294959.84	삼동면 봉화리1155	폐기	2021.12.03.
254	도근점	3038	지역	144367.72	295801.17	삼동면 물건리 412-3	폐기	2021.12.03.
255	도근점	3039	지역	144083.03	296157.04	삼동면 물건리556-3	폐기	2021.12.03.
256	도근점	3041	지역	148486.83	290419.76	삼동면 지족리 1105-3	폐기	2021.12.03.
257	도근점	3042	지역	148560.87	290446.84	삼동면 지족리 1102	폐기	2021.12.03.
258	도근점	3055	지역	147999.63	289627.04	삼동면 영지리 1732-1	폐기	2021.12.03.
259	도근점	3056	지역	147938.75	289746.28	삼동면 영지리 1734-6	폐기	2021.12.03.
260	도근점	3057	지역	148019.2	289868.65	삼동면 영지리1798	폐기	2021.12.03.
261	도근점	3058	지역	148155.53	289939.05	삼동면 영지리 1734-6	폐기	2021.12.03.
262	도근점	3059	지역	148279.1	289996.99	삼동면 지족리 1154-3	폐기	2021.12.03.
263	도근점	3060	지역	148323.66	290120.36	삼동면 지족리 1155-1	폐기	2021.12.03.
264	도근점	3062	지역	148404.15	290368.23	삼동면 지족리 1118-2	폐기	2021.12.03.
265	도근점	3063	지역	148582.32	290594.85	삼동면 지족리 1086	폐기	2021.12.03.
266	도근점	3067	지역	148626.71	291405.41	삼동면 지족리 291-7	폐기	2021.12.03.
267	도근점	3069	지역	146538.1	287775.6	삼동면 영지리 2951	폐기	2021.12.03.
268	도근점	3070	지역	147690.95	295492.87	삼동면 동천리 388-1	폐기	2021.12.03.
269	도근점	3071	지역	147824.33	295737.11	삼동면 지족리 359-3	폐기	2021.12.03.
270	도근점	3072	지역	148162.34	295924.08	삼동면 동천리 329-4	폐기	2021.12.03.
271	도근점	3073	지역	148024.99	295942.68	삼동면 동천리 1514-3	폐기	2021.12.03.
272	도근점	3074	지역	146399.97	287907.91	삼동면 영지리 2961	폐기	2021.12.03.
273	도근점	3078	지역	148270.67	292398.65	삼동면 금송리 675	폐기	2021.12.03.
274	도근점	3080	지역	148191.49	292596.99	삼동면 금송리 920	폐기	2021.12.03.
275	도근점	3081	지역	148163.14	292523.71	삼동면 금송리 909-9	폐기	2021.12.03.

연번	종류	기준점명	좌표구분	X좌표	Y좌표	상세주소	설치구분	폐기일자
276	도근점	3082	지역	148094.86	292553.59	삼동면 금송리 938	폐기	2021.12.03.
277	도근점	3084	지역	147927.84	292462.61	삼동면 금송리979-13	폐기	2021.12.03.
278	도근점	3085	지역	147829.36	292425.01	삼동면 금송리 979-24	폐기	2021.12.03.
279	도근점	3086	지역	147810.31	292496.12	삼동면 금송리 979-25	폐기	2021.12.03.
280	도근점	3087	지역	147488.42	292473.81	삼동면 금송리 1009-4	폐기	2021.12.03.
281	도근점	3088	지역	147486.38	292552.65	삼동면 금송리 1008-3	폐기	2021.12.03.
282	도근점	3089	지역	147412.94	292526.98	삼동면 금송리 1012	폐기	2021.12.03.
283	도근점	3090	지역	147350.12	292568.01	삼동면 금송리 1025-3	폐기	2021.12.03.
284	도근점	3091	지역	147287.13	292636.44	삼동면 금송리 1025-3	폐기	2021.12.03.
285	도근점	3092	지역	147207.78	292643.8	삼동면 금송리 1028-1	폐기	2021.12.03.
286	도근점	3093	지역	147236.4	292561.15	삼동면 금송리 1030-2	폐기	2021.12.03.
287	도근점	3094	지역	147144.55	292573.22	삼동면 금송리 1030-10	폐기	2021.12.03.
288	도근점	3095	지역	147027.84	292554.56	삼동면 금송리 1288-1	폐기	2021.12.03.
289	도근점	3096	지역	146271.46	288176.47	삼동면 영지리 2963-2	폐기	2021.12.03.
290	도근점	3107	지역	148195.85	292662.36	삼동면 금송리 920	폐기	2021.12.03.
291	도근점	3108	지역	148074.22	292661.93	삼동면 금송리 973	폐기	2021.12.03.
292	도근점	3109	지역	148012.75	292612	삼동면 금송리 977	폐기	2021.12.03.
293	도근점	3110	지역	147918.85	292562.46	삼동면 금송리 979-9	폐기	2021.12.03.
294	도근점	3112	지역	147708.35	292495.42	삼동면 금송리 1000	폐기	2021.12.03.
295	도근점	3113	지역	147610.96	292551.39	삼동면 금송리 1005	폐기	2021.12.03.
296	도근점	3114	지역	147527.87	292591.86	삼동면 금송리 1024	폐기	2021.12.03.
297	도근점	3115	지역	147439.52	292635.94	삼동면 금송리 1025-4	폐기	2021.12.03.
298	도근점	3117	지역	147326.41	292757.36	삼동면 금송리 1026-7	폐기	2021.12.03.
299	도근점	3118	지역	147253.77	292713.6	삼동면 금송리 1028-5	폐기	2021.12.03.
300	도근점	3119	지역	147206.65	292718.16	삼동면 금송리 1032	폐기	2021.12.03.
301	도근점	3121	지역	147069.59	292697.8	삼동면 금송리 1285-1	폐기	2021.12.03.
302	도근점	3122	지역	147089.55	292644.19	삼동면 금송리 1287-1	폐기	2021.12.03.
303	도근점	3123	지역	147021.93	292648.03	삼동면 금송리 1287-6	폐기	2021.12.03.
304	도근점	3129	지역	146720.37	288239.36	삼동면 영지리 2795	폐기	2021.12.03.
305	도근점	3130	지역	146693.9	288098.43	삼동면 영지리 산460-1	폐기	2021.12.03.
306	도근점	3131	지역	145525.8	293715.26	삼동면 봉화리 1052	폐기	2021.12.03.
307	도근점	3133	지역	145552.99	293943.05	삼동면 봉화리 2260	폐기	2021.12.03.
308	도근점	3135	지역	145538.56	294147.91	삼동면 봉화리 2271	폐기	2021.12.03.
309	도근점	3136	지역	145442.03	293955.95	삼동면 봉화리 2323	폐기	2021.12.03.
310	도근점	3139	지역	145300.05	293817.27	삼동면 봉화리 2287	폐기	2021.12.03.
311	도근점	3141	지역	145383.36	293960.27	삼동면 봉화리 2272	폐기	2021.12.03.
312	도근점	3144	지역	145143.86	293700.42	삼동면 봉화 2295	폐기	2021.12.03.
313	도근점	3145	지역	144915.41	293698.75	삼동면 봉화리 2309	폐기	2021.12.03.
314	도근점	3146	지역	145027.9	293757.87	삼동면 봉화리 2308	폐기	2021.12.03.
315	도근점	3147	지역	145137.57	293775.52	삼동면 봉화리 2299	폐기	2021.12.03.
316	도근점	3149	지역	145351.79	293741.34	삼동면 봉화리 2315	폐기	2021.12.03.
317	도근점	3151	지역	145552.76	293040.19	삼동면 봉화리 806	폐기	2021.12.03.
318	도근점	3153	지역	145545.04	293294.79	삼동면 봉화리 813-5	폐기	2021.12.03.
319	도근점	3154	지역	145441.21	293315.02	삼동면 봉화리 813-5	폐기	2021.12.03.
320	도근점	3160	지역	145484.06	292737.88	삼동면 봉화리 1185	폐기	2021.12.03.
321	도근점	3165	지역	148373.27	290836.76	삼동면 지족리 870-9	폐기	2021.12.03.
322	도근점	3167	지역	148343.69	290958.27	삼동면 지족리 870-5	폐기	2021.12.03.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1-1360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 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남 해 군 수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²)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592호	패류양식 (바닥식)	피조개	이동면 원천	50,000	2021.10.08 2031.10.07 (10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원천 어촌계	192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593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이동면 초음	50,000	2021.10.07 2031.10.06 (10년)	남해군 삼동면 삼이로4번길 19	강철호	193호 재개발

※ '21/22년 양식장 ·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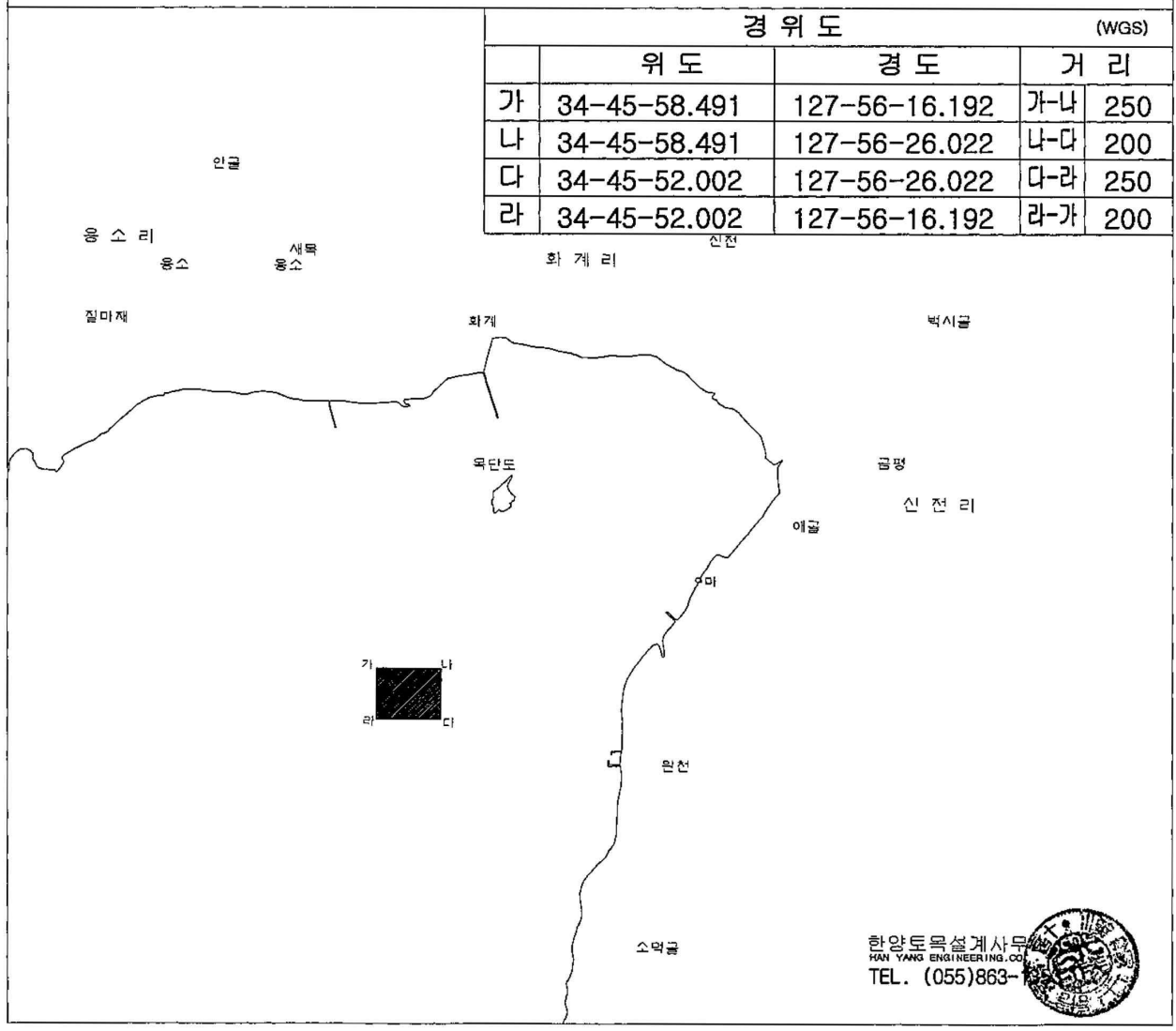
○ 양식어업권 소멸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²)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192호	패류양식 (바닥식)	피조개	이동 원천	50,000	2011.10.08 2021.10.07 (10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원천 어촌계	
남해양식 제193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이동 초음	50,000	2011.10.07 2021.10.06 (10년)	남해군 삼동면 삼이로4번길 19	강철호	

592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축척 : $\frac{1}{25,000}$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 (마) N34-46-10.39, E127-57-05.04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적 : 50,000 m²



한양토목설계사무
HAN 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

593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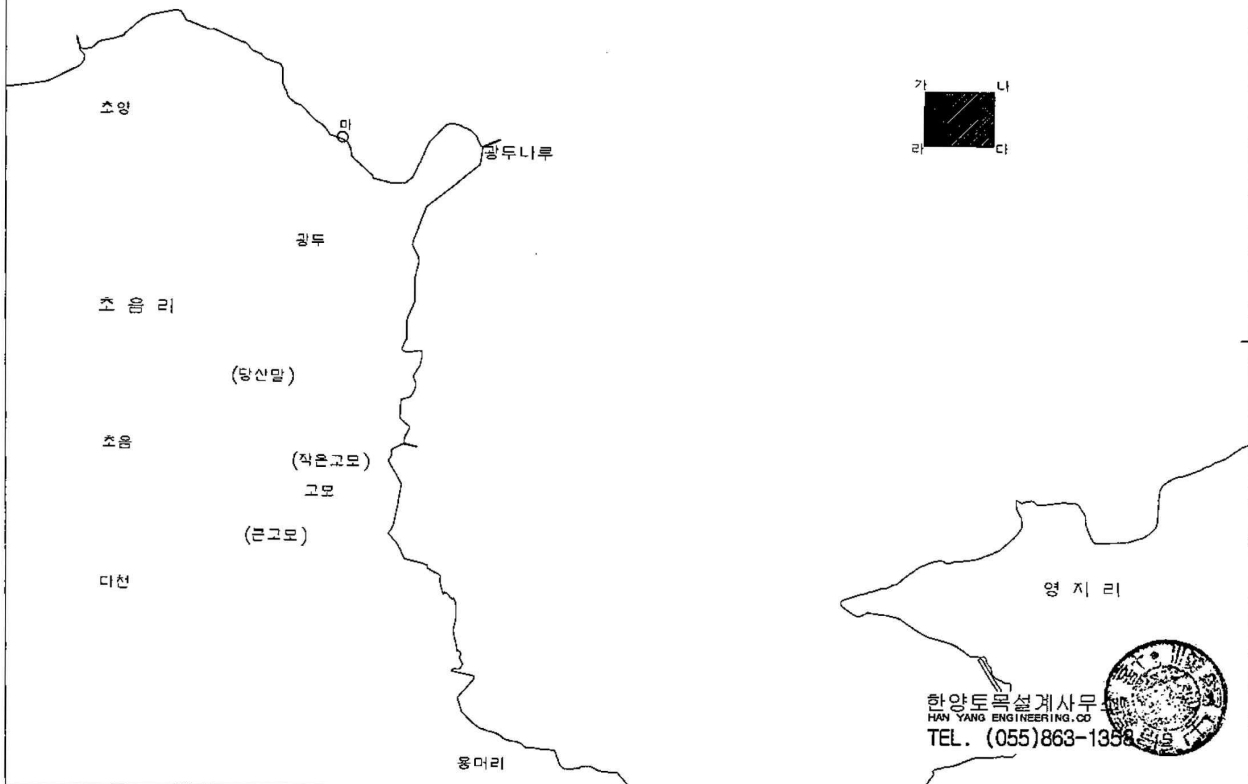
축척 : $\frac{1}{25,000}$

(마) N34-49-44.511, E127-56-19.970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50,000 m²

경 위 도				(WGS)
	위도	경도	거 리	
가	34-49-50.864	127-57-42.762	가-나	100
나	34-49-50.864	127-57-52.600	나-다	100
다	34-49-44.374	127-57-52.600	다-라	100
라	34-49-44.374	127-57-42.762	라-가	100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 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8

남해군 공고 제2021-1608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 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남 해 군 수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²)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594호	패류양식 (바닥식)	피조개	이동 용소	50,000	2021.12.08 2031.12.07 (10년)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용소 어촌계	194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595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고현 이어	50,000	2021.12.08 2031.12.07 (10년)	하동군 금성면 가린길 56-7	주명래	195호 재개발

※ '21/22년 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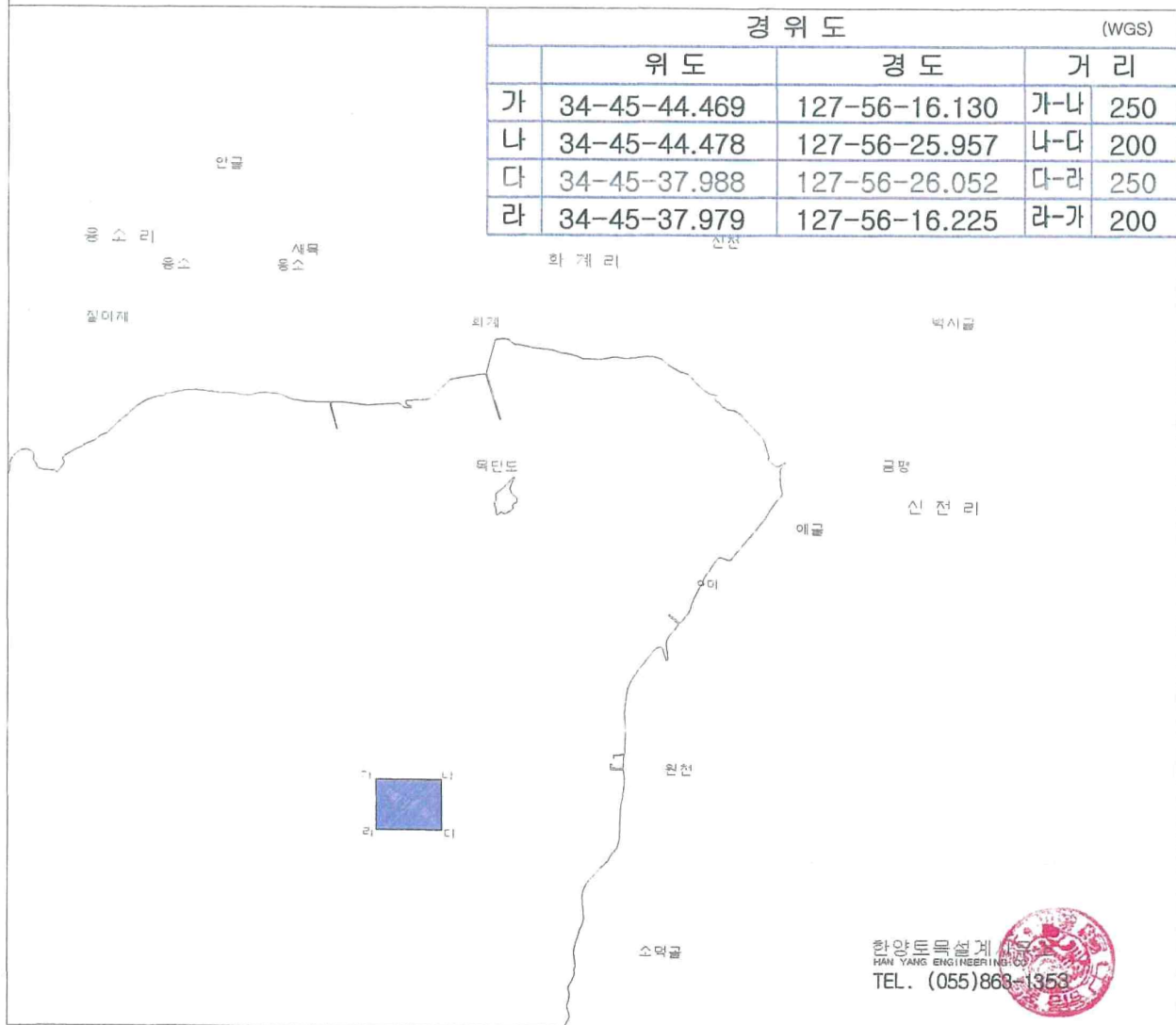
○ 양식어업권 소멸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²)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194호	패류양식 (바닥식)	피조개	이동 용소	50,000	2011.12.08 2021.12.07 (10년)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용소 어촌계	
남해양식 제195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고현 이어	50,000	2011.12.08 2021.12.07 (10년)	하동군 금성면 가린길 56-7	주명래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594호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 (마) N34-46-10.39, E127-57-05.04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50,000 m²

축척 : $\frac{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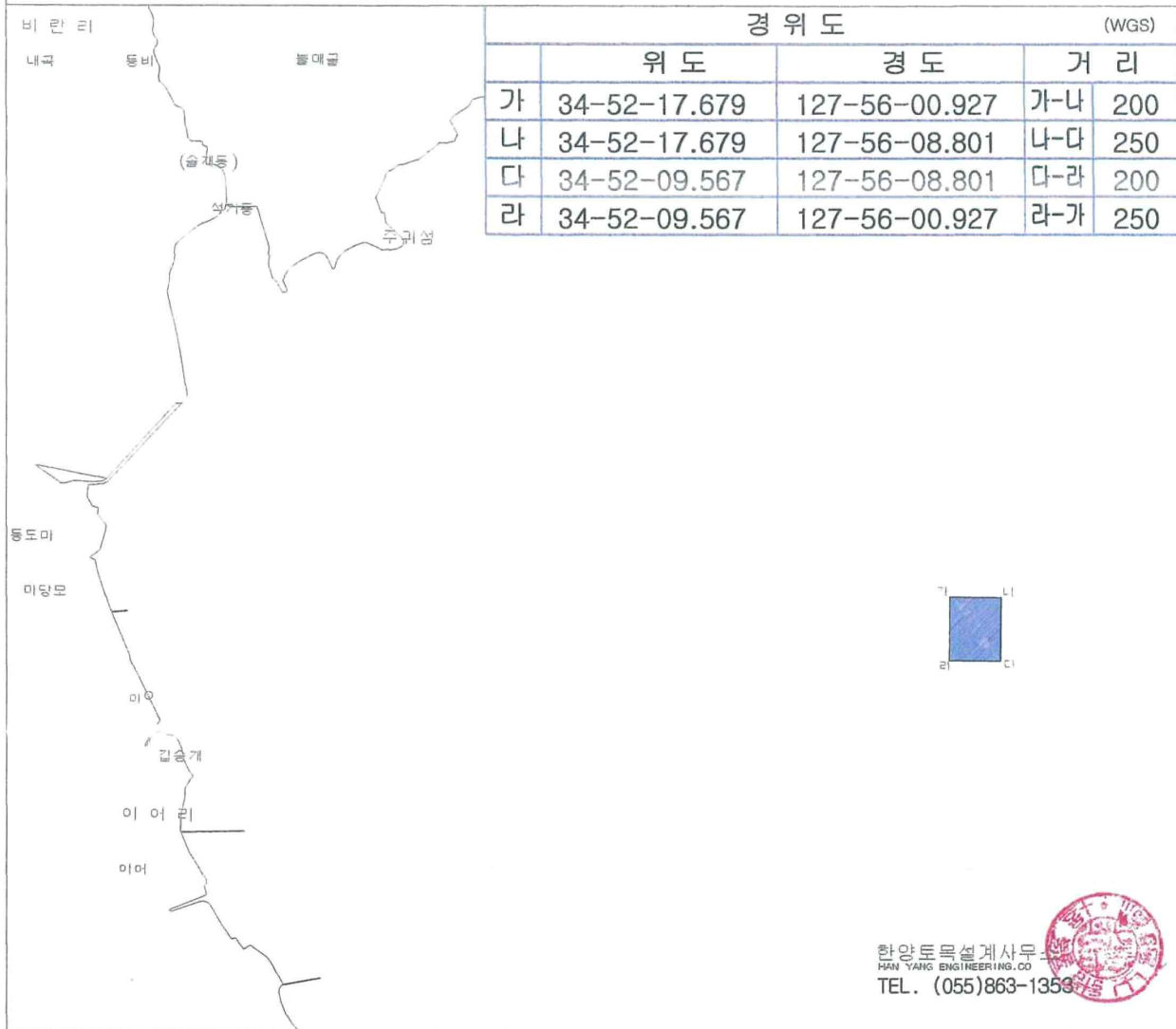


한양토목설계사
 HAN YANG ENGINEERING CO.
 TEL. (055)868-1353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5952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 (마) N34-52-03.78 E127-54-00.10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50,000 m²

축척 : $\frac{1}{25,000}$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 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3

남해군 공고 제 2021-1633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7일

남 해 군 수

1. 목 적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 및 암석이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시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손실 등의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사면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을 지정 하고자 함.

2. 주민의견 수렴 개요

가. 행정예고 기간 : 2021. 12. 7. ~ 2021. 12. 28.(21일간)

나. 의견제출 기간 : 2021. 12. 7. ~ 2021. 12. 28.(21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라.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3. 의견제출

-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남해군 산림공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기한 : 2021. 12. 28. 까지
-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55-860-3985)
- 라. 제출처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농업기술센터
- 마. 문의처 :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산림공원과 공원녹지팀 ☎ 055)860-3654
- 바. 처리방향 :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

지구명	위 치	지정내용			지정사유	비 고
		유형	등급	면적(m ²)		
남산공원1지구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산1-1	붕괴위험	D	4,585	재해위험도평가에 따른 지구 지정	
남산공원2지구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산1-1	붕괴위험	D	9,137	재해위험도평가에 따른 지구 지정	
남산공원3지구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산1-1	붕괴위험	D	18,392	재해위험도평가에 따른 지구 지정	

5. 붕괴위험지역에서 행위 협의 사항

-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다.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를 수반하는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우리군 재난안전과와 협의하여야 함.

6.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

지 구 명	사업시기	사업예산(백만원)	사업내용
남산공원1,2,3지구	2023년 ~ 2025년(예정)	3,700	낙석방지시설 및 석축옹벽 등 1식

※ 사업시기 및 예산은 국·도비 지원 계획에 따라 변동됨

- 붙임 1. 주민의견 제출양식 1부.
 2. 위치도 및 지형도면 1부. 끝.

[붙임 1]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남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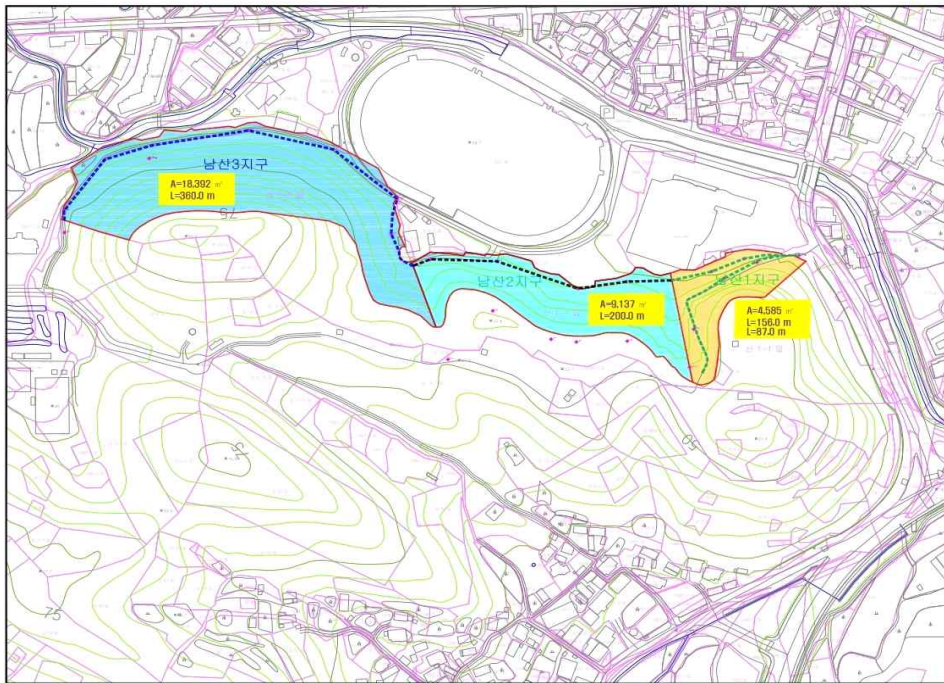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위치도 및 지형도면



남 산 지 구 1:1,200



남해군 공고 제2021-1634호

2025년 남해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남해군의 2025년 남해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2. 10.

남 해 군 수

1. 계획의 개요

- 가. 계 획 명 : 2025년 남해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 나. 위 치 : 경상남도 남해군 전역
- 다. 규 모 : 남해군 행정구역 전역 579.490km²
- 라. 시 행 자 : 남 해 군
- 마. 계획기간 : 목표연도 2025년

2. 계획의 목적

- 가. 남해군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장기적이고 바람직한 도시발전방향 제시
- 나. 용도지역·지구·구역 조정과 군계획시설(기반시설)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의 체계적·합리적 정비를 통하여 전체적인 군정 발전의 기틀 마련
- 다. 기존 관리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실천체계 수립

3. 공람사항

- 가. 2025년 남해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4.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기 간 : `21.12.10. ~ `21.12.24.까지(15일간)
- 나. 장 소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읍·면사무소

5. 의견제출

- 가.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
- 나. 제출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내 도시건축과 및 읍·면사무소
- 다. 의견제출 내용 : 2025년 남해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